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9. 09. 이해식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6. 9. 1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6. 9. 1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해식의원)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
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
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

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생략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붙임]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9.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에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이 되는 재해의 적용 대상에 추가하려는 공소청 직원을 「형사소송법」 제494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소청 직원'으로 명확히 하고(안 제5조제8호), 검찰청 폐지 및 신설 기관 출범에 따라 기존 공무원의 소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재해보상 관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 시행 전 검찰청 사법경찰관리가 입은 재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신설함(안 부칙 제2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8호 중 “「형사소송법」 제494조에 따른 공소청 직원,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을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같은 법 제494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소청 직원,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으로 한다.

안 부칙 본문을 삭제하고,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8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45조의9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입은 재해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제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 ----- ----- ----- -----.	제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 -----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8.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제245조의9에 따른 사법경찰관이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6조의2에 따른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수사·단속 또는 범인이	8. 「형사소송법」 제494조에 따른 공소청 직원,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 ----- -----	8.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같은 법 제494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소청 직원,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또는 -----

나 피의자를 체포 하다가 입은 재해 9. ~ 11. (생략)	----- ----- 9. ~ 11. (현행과 같 음)	----- ----- 9. ~ 11. (현행과 같 음)
---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 중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제245조의9에 따른 사법경찰관리나”를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같은 법 제494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소청 직원,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8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45조의9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입은 재해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 7. (생략) 8.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제245조의9에 따른 사법경찰관리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6조의2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의 수사·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 9. ~ 11. (생략)	제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 ----- ----- -----. 1. ~ 7. (현행과 같음) 8.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같은 법 제494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소청직원,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 ----- ----- ----- 9. ~ 11. (현행과 같음)